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4187 |
|----------|-------|

발의연월일 : 2018. 7. 3.

발의자 : 박선숙 · 박지원 · 인재근
권칠승 · 장정숙 · 윤영일
박주현 · 이용호 · 김현권
노웅래 · 김삼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 2 신설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과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아동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0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1. (생략)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 2.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과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3. ~ 7. (생략) <u><신설></u> | 3. ~ 7.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아동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 |

| | |
|---|---|
| | <p><u>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u></p> |
|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 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 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 ----- ----- ----- ----- ----- ----- ----- ----- ----- ----- ----- ----- ----- ----- <u>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u>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u>아니하고</u> 개인위치정보 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u>아니하거나 실제 동의 여 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u> ---- ----- |
| 11. ~ 14. (생 략) | 11. ~ 14. (현행과 같음)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